

제43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 7. 30.)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2026년 8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6015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한다.

제6조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감은”을 “학교의 장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 제18조의4제4항에 따라”로, “매년 1회”를 “연 2회”로, “예방교육
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예방교육을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3
항 중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예방교육은”을 “예
방교육과 제2항에 따른 교육·연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u>다음 각 호와 같다.</u>	제2조(정의) ----- ----- <u>다음과</u>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도박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① ~ ③ (생략)	제6조(도박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제8조(예방교육) ① <u>교육감은</u>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u>매년 1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제8조(예방교육) ① <u>학교의 장은</u> <u>「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u> <u>제18조의4제4항에 따라 --- 연</u> <u>2회 ----- 예방교육을 실시</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에</u>	③ <u>제1항</u> -----

다른 도박 예방교육은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생 략)

----- 예방교육과 제2항에
다른 교육·연수는 -----
-----.

④ (현행과 같음)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 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 2회 이상 의무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예방 중점 교육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및 단순 기재 오류 수정
- 관계법령 개정 사항 반영
 - 도박 예방교육 운영 주체 및 주기 변경